

제32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

행정복지위원회

검 토 보 고 서

2026. 4. 9.(목)



행정복지위원회
전문위원 고종선

- 목 차 -

1.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.. 1
2.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통행금지·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..... 4
3.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독서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 7
4.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
5.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

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검토과정

- 의안번호: 제2811호
- 제출 일: 2026년 3월 25일
- 제출 자: 달성군수
- 회부일자: 2026년 4월 8일

2. 제안사유

- 손해배상 시 지자체장의 면책 특례 규정은 상위법령과의 체계상 혼선 우려가 있고, 사용료 미반환 원칙 또한 이용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정비 하고자 함. 이에 「민법」 및 「소비자기본법」 등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불필요한 중복과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고, 현행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실태를 반영하여 관련 별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은 「민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, 자치법규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면책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(안 제14조)
- 종전 사용료 반환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던 규정을 「소비자기본법 시행령」에 근거하여 정비함으로써, 사용료 반환 기준을 합리화하고 보다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)

- 현행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실태 변화 등을 반영하여 관련 별표를 정비(안 별표)

4. 관계법령

- 「민법」, 「소비자기본법 시행령」 제8조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의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 안 13조의 경우 종전의 제한적이었던 사용료 반환 기준을 「소비자기본법 시행령」상의 ‘소비자분쟁해결기준’에 명시된 수리·교환·환급·배상의 기준을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. 또한, 시설 이용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지자체장의 배상 책임을 면제하던 조항을 삭제(안 제14조제1항)하여 「민법」 제750조(불법행위의 내용)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책임 소재를 가리도록 하였습니다. 이러한 개정사항은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 소재는 법률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바, 본 개정안을 통해 법률우위의 원칙을 준수하고자 함입니다.
- 아울러 현행 운영 실태와 반영하여 체육관 등 주요 시설의 사용료 기준표(별표 2)를 현실성 있게 조정하였습니다.
- 최근 관내 공공시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환불 분쟁(제322회 정례회 안건: 사문진피크닉장 환불 절차 등)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추세입니다.
- 따라서 본 개정안은 시대적 흐름과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통행금지·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1. 검토과정

- 의안번호: 제2812호
- 제출일: 2026년 3월 25일
- 제출자: 달성군수
- 회부일자: 2026년 4월 8일

2. 제안사유

- 상위법령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31조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정신적·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정 지역을 ‘청소년 통행금지구역’ 또는 ‘청소년 통행제한구역’으로 지정·운영하여 해당 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및 선도 활동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지정기준 및 대상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지정 및 해제절차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 및 운영·협력체계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제9조)

4. 관계법령

- 「청소년 보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31조를 근거로, 지역 내 유해업소 밀집 구역 등에 대한 물리적인 접근 통제와 선도 활동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.
- 과거 인근 대구광역시 중구의 경우, 성매매 집결지였던 일명 '자갈마당' 일대 관리를 위한 「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 통행금지·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1999년 제정하여 장기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(레드존)으로 지정·운영하다가 재개발에 맞춰 2019년 해제한 실사례가 있으며, 현재도 다수 지자체가 지역의 특수성에 맞추어 해당 조례를 운영 중입니다.
-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지정 기준에 따라 '통행금지구역(24시간 금지)' 과 '통행제한구역(오후 7시~다음 날 오전 6시)' 을 엄격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, 안 제6조에서 구역 지정 및 해제 시 공청회 및 토론회 등 의견 청취 절차를 의무화한 것은 행정의 민주성 확보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입니다.
- 다만, 특정 지역에 대한 청소년 통행 금지·제한구역으로 지정될 경우, 상권 위축을 우려한 상인들의 반발이나 낙인효과(Stigma)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에 인근 지자체의 사례로 기억되는 유해환경뿐만 아니라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31조에 명기된 “신체적 건강” 을 해칠 우

려가 있는 구역에 대한 지정기준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청소년 통행 금지·제한구역이 지역 낙인이 아닌 지역 안전과 치안을 확보하는 제도로 인식하게끔 하는 인식의 전환을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.

- 또한 조례 제정 이후 단순히 표지판 설치(안 제7조)에 그친다면 실질적 주민체감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집행부서에서는 조례 시행 후 실제 구역 지정 시, 관할 경찰서 및 시민단체와의 합동 단속 시스템(안 제9조)을 내실 있게 구축하고 지역 사회와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할 것입니다.

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독서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

1. 검토과정

- 의안번호: 제2813호
- 제출일: 2026년 3월 25일
- 제출자: 달성군수
- 회부일자: 2026년 4월 8일

2. 제안사유

- 군민독서실 폐관 및 향후 별도의 운영 계획이 없음에 따라, 해당 시설의 관리·운영 근거인 현행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독서실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별도의 실효성이 없음에 폐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독서실 설치 및 운영 조례」 폐지

4. 관계법령

- 해당 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본 폐지 조례안은 기존에 운영되던 달성군 군민독서실이 2022년 폐관됨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·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.
- 달성군 군민독서실은 청소년들의 면학여건 조성과 군민의 평생교육 공간 마련을 이바지하기 위해 2003년도부터 화원읍 행정복지센터 별관 2층에서 운영되었습니다.
- 코로나19 발생 이후 장기 휴관으로 인한 이용객 감소와 화원읍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따른 청사 내 시설 유지관리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대두되었고, 「공공도서관 운영평가 지침」(공간 및 시설혁신)에 의거하여 폐쇄적 독서실 형태에서 화원읍 작은도서관으로 확대 이전한 바 있습니다.
- 자치법규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범이므로, 그 대상이 되는 시설이나 사무가 소멸하여 향후 운영 계획이 없을 경우, 조례를 존치시키는 것은 자치법규 체계의 혼란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합니다.
- 따라서 법적 체계의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, 본 폐지 조례안은 적법하고 타당한 조치로 됩니다.

대구광역시 달성군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검토과정

- 의안번호: 제2814호
- 제출 일: 2026년 3월 25일
- 제출 자: 달성군수
- 회부일자: 2026년 4월 8일

2. 제안사유

- 저출산 ·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안정적 정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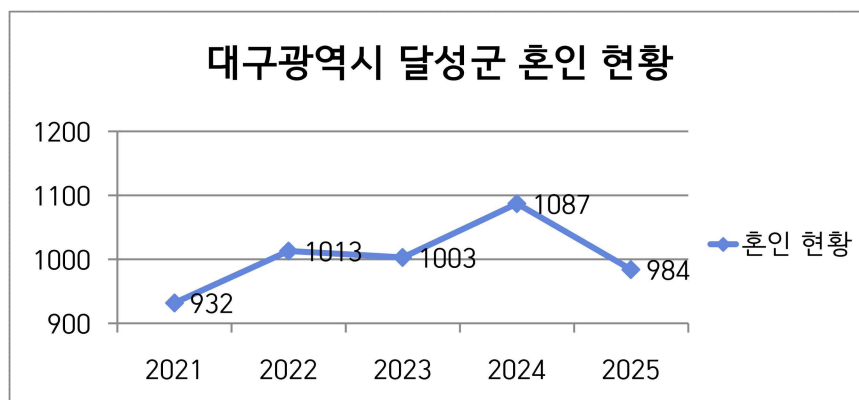
- 신혼부부 저축 시 예산의 범위에서 매칭 지원 근거 신설(안 제3조의 2 제1항 신설)
- 지원대상 · 지원금액 · 저축기간 · 신청절차 · 사후관리 및 환수 등 세부사항 군수 위임 규정 신설(안 제3조의2제2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)

4. 관계법령

-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,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」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저출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, 달성군에 거주하는 신혼 부부가 일정 기간 저축을 유지할 경우 군에서 동일한 금액(1:1 비율)을 매칭하여 지원해 주는 ‘신혼부부 자산형성 지원’ 근거(안 제3조의2)를 신설하고자 함입니다.
-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발간한 『제2차 국민인구행태조사보고서_2025년』에 따르면 혼인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로 ‘결혼 생활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서’를 손꼽고 있습니다. 이에 혼인 초기 신혼부부의 종잣돈 마련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본 정책은 지역 내 인구 유입 및 청년층 이탈 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시책으로 평가됩니다.
- 자산형성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‘희망두배 청년통장’, 보건복지부의 ‘청년내일저축계좌’ 등 매칭 지원 사업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나, 이를 ‘신혼부부’에 특화하여 연간 약 24억 원(1,000쌍 기준)을 지원하고자 하는 이번 개정안은 달성군만의 결혼 장려 특화 사업으로 선제적인 저출산·고령사회 대응방안으로 판단됩니다.



출처: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통계서비스(26. 3. 25. 기준)

- 다만, 막대한 세금이 매년 투입되는 예산 수반 사업이므로, 향후 규칙 제정 및 사업 실행 단계에서 보건복지부나 대구시 단위에서 시행 중인 기타 자산형성 사업(희망저축계좌, 청년내일저축계좌 등)과의 ‘중복 수혜’ 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.

- 아울러 약정 기간 내 타 지역 전출, 이혼, 저축 중단 등 변수 발생 시의 명확한 환수 기준과 사후관리 규정을 설계하여 오·부정 지급 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.

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검토과정

- 의안번호: 제2815호
- 제출 일: 2026년 3월 25일
- 제출 자: 달성군수
- 회부일자: 2026년 4월 8일

2. 제안사유

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통합지원 협의체를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에 통합지원협의체의 기능을 추가하고 상위법인 「사회보장급여법」의 변경사항('17.3.21. 일부개정)을 반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조항 추가(안 제3조)
- 상위 법률 변경 사항 반영(안 제5조)
 -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자격 요건 추가

4. 관계법령

- 「사회보장급여법」 제41조,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1조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최근 국가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‘통합지원(의료·요양 등)’ 체계 구축에 발맞추어, 새로 신설해야 할 ‘통합지원협의체’의 심의·자문 기능을 기존의 ‘지역사회보장협의체’가 통합하여 수행(안 제3조)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조치입니다.
- 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르면, 통합지원을 위해 지자체마다 협의체를 두되 기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20조)하고 있습니다. 이에, 개정안 제3조제7호에 따라 기존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.
- 또한, 읍·면 단위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현장의 목소리가 읍·면 단위 복지 정책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‘읍·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’을 군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포함(안 제5조제2항제4호)시킨 것은 「사회보장급여법」 제41조를 충실히 반영한 적법한 조치입니다.
- 종합적으로 본 개정안은 정부부처에서 추진한 효율적인 체계구축을 위한 위원회 통·폐합 사항과 부합하며, 지역 복지 거버넌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